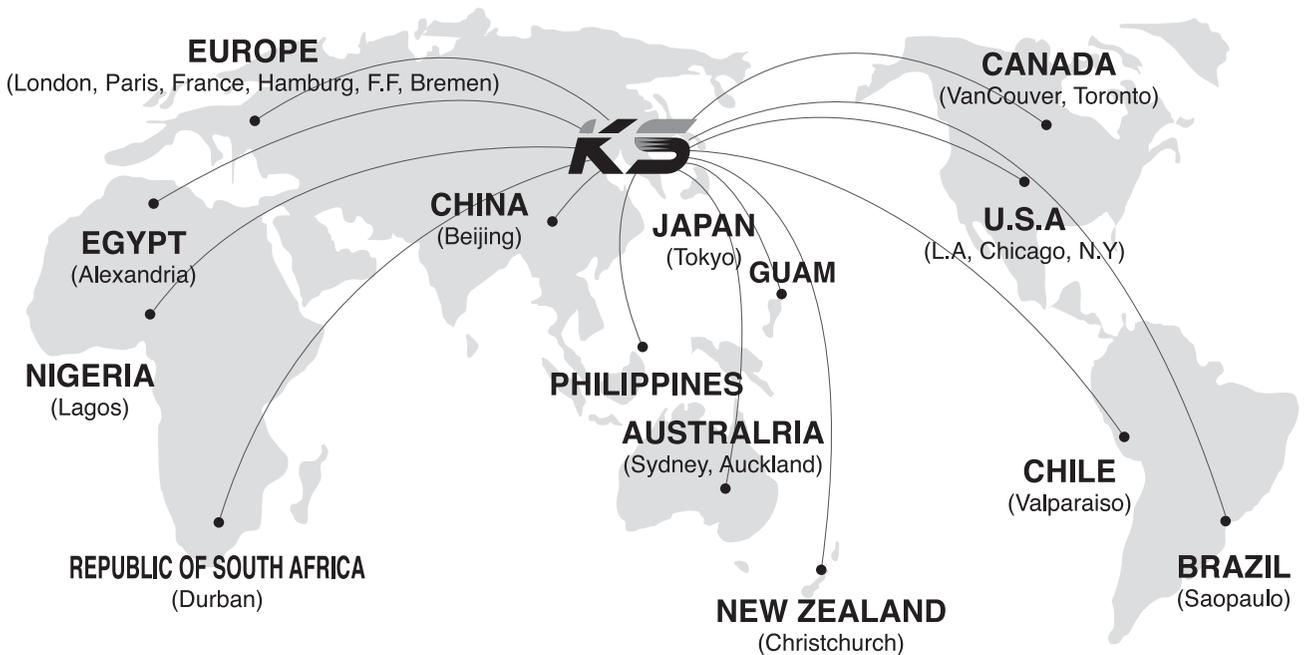


"세계 어느곳이든 **KS**가 함께 하겠습니다."



Contents

- 미 국
- 캐나다
- 호주, 뉴질랜드
- 아시아(중국, 일본,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 유 럽(영국, 독일)

**KS 코리아해운항공(주)은 다년간 축적된 경력과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소중한
고객의 화물 하나하나를 성심 성의껏 운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KS 코리아해운항공(주)은 새롭고 낯설은 곳으로 이민, 이주하시는 분께 해외이주화물을 안심하고 보내드리
는 것을 모토로 하는 해외이주화물 및 수출입화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국제 복합 운송업체 (복합 운송 주선
업 등록번호 : 제 2291호, 건설교통부 화물과, 복합운송협회 등록번호 : 제 1130호, 한국복합운송협회)입니다.

다년간 축적된 경력과 신뢰와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안전, 정확하게 포장, 운송, 통관 선적, 보험 Door to
Door 서비스를 완벽한 Network로 일괄적으로 운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입주 시기와 계획에 맞춘 운송
및 PACKING 스케줄, 현지에서의 화물 DELIVERY시 안전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혹시 모를 파손과 분실에 대
비한 보험가입과 사후 처리 등 이외의 모든 이주에 관한 것을 이제 KS 코리아해운항공(주)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KS 코리아해운항공(주) 임직원은 소중한 고객님의 화물 하나하나를 성심 성의껏 운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
니다.

KS 코리아해운항공(주) 일동

1. 번역 · 안내

재학(졸업) 증명서, 생활기록부(성적증명서 포함), 건강기록부, 각종 자격증
“교적 및 세례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서

2. 무사고 사실증명 안내 (현지 보험료 30~40%할인)

- (1) 차량번호
 - (2) 영문이름
 - (3) 가입회사(보험)
 - (4) 가입 년월일
 - (5) 가입한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줌
- ※ 발행처 : 각 자동차 보험회사

3. 국제면허 갱신 안내(운전 경력 증명서<영문> 발급처, 국내 면허시험장)

여권복사, 반명함판 사진 1매, 면허증, 수입인지 대금(w5,000), Visa copy (항공권)
※ 발행처 : 관할 경찰서 및 면허시험장

준비서류

준비서류 안내

- 가. 이민자, 유학생 : 1) 비자 사본 1매 2) 여권 사본 1매(각 1부씩)
나. 주 재 원 : 1) 여권 copy 2) 발령장 3) VISA COPY

화물 PACKING 안내

포장을 원하시는 날로부터 5~7일전에 연락을 주시면 운송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폐사에서는 완벽한 작업준비를 하게 됩니다.

- 포장은 파손, 번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사 직영의 포장 전문 기술자가 특수자재를 사용하여 귀하의 덩에서 내포장을 완료하고, 현장 또는 직영공장에서 CONTAINER 작업을 함으로써 완벽한 포장을 완료하게 됩니다.
- 탁송하실 모든 화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놓으시면 됩니다. 직접 포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품목별 포장은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가 구 류 :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수포장 자재를 사용하여 전체면을 포장합니다. 이때 빈공간은 가벼운 물건(이불, 방석, 면제품) 등으로 PACKING자가 확인 후 채워 넣을 때가 많습니다.

면 제 류 : 수출용 CARTON BOX를 규격별로 준비하여 포장하게 됩니다.

주방기구 : 파손 우려 품목은 AIR CAP으로 개별 포장 하므로 잘 건조시켜 두시면 됩니다.

전기제품 : 목적지의 전기 용량을 확인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면 품목 및 크기에 따라 개별 포장을 하게 됩니다.

- ※ 참고 ① CANADA : CYCLE(HZ) - 60, POWER(V) - 110
NEWZEALAND : CYCLE(HZ) - 50, POWER(V) - 240
AUSTRALIA : CYCLE(HZ) - 50, POWER(V) - 220/240
KOREA : CYCLE(HZ) - 60, POWER(V) - 110/220
- ② CANADA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품목 : 가스오븐렌지
NEWZEALAND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품목 : 석유난로(히터)
AUSTRALIA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품목 : 전구, 조명기구(소켓이 전혀 다름)
T.V → NTS방식 : KOREA, U.S.A, CANADA
PAL방식 : AUSTRALIA, NEWZEALAND

식 품 류 : 특수 CAN을 사용하여 포장을 하게 됩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건어물은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잘 건조 시키셔야 합니다.

도구 및 기계류 : 파손우려 품목만 PACKING하고 나머지 품목은 BOX에 포장하게 됩니다.
피아노, 올겐은 따로 포장합니다.

규제품목 : ① 농산물, 식품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낙농제품, 술(소주, 양주), 담배, 씨앗류(깨류, 콩, 농산물), 박제품, 꿀, 초목(건조시킨 것), 과일류, 흙, 돌 등

② 새로 구입하신 것은 상품표시, 가격표 등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시 품목안내 및 참고사항

▶ 주요품목

아래 품목 중 () 안에 있는 품목은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며, 우리나라에서 하찮게 여기는 물건은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집에 있는 것을 준비하시는 것이 경비가 절감됩니다.

(1) 가구류

자개장, 삼층장, 이층장, 문갑, 사방탁자, 애기장, 차단스, 책장 책꽂이, (피아노), 탁자등가구, 소파, 고가구, 쌀통, (침대), (거울), (옷걸이), (행거), 옷걸이장, 조립식장 = 파란들, (교자상), 화장대, 의자, (서랍장), 주방식탁, 책상

(2) 수공예품

(액자), 병풍, 족자, 가리개, (돗자리), 인형, 장난감, 매듭, 목각, 레이스, (벽시계), 벽걸이, (달력), (기타 악세사리 모든 것), 수석, 반질고리, 부채, 발판, 사진액자, (도자기-화병)

(3) 면직류

이불-누비 카시미론, 방석, 쿠션, 침대카바, 베개-카바, 담요-밍크, 런닝, 팬티, 잠옷, 츄리닝, 점퍼, 양복, 넥타이, (한복-동정), 타올, 카페트, 커튼 지, 모자, 모든 의류, 직물류, 보료, 양말, (장갑), (스타킹), (수영복)

(4) 식품류

건어물(미역, 김, 멸치, 오징어), (고추장), (된장), (간장), (고추가루), 메주가루, 다시다, (라면), 인삼차, 프림, (굵은소금), (국수류), 냉면, 나물-건조된 것.

(5) 식기류

스텐제품, 흙세트, (유리그릇), (사기그릇), 밥솥, 밥통, (항아리), 후라이팬, 컵세트, 커피포트, 약탕기, 찻상, 구절판, 믹서기, 주스기, 다리아스텐, 고무, 플라스틱, 스텐 김치통, (들통), 도마, 칼, 절구, 국자-주걱, 행주, 접시, 식기건조기, 냄비, 뚜껑, 스푼세트, 호일, 랩걸이.

(6) 도구 및 기계

재봉틀, 각종 연장, 공구세트, 빨래판, 우산, 낚시도구, 등산장비, (신발류 - 구두, 운동화, 슬리퍼), 버너, 다리미, 전기장판-담요, 전축, 카세트-테이프, 레코드판, 악기류, 전화기-무선, 스탠드, (빨래다이), 자전거, 컴퓨터, 트로피, 책, 앨범-사진, 가방, (학용품), 화장품, (구급약), 스케이트, 스키, (생리대), 화장지, 츄리닝, 라켓, 골프세트, 텐트, (선풍기), 비디오, T.V, 온도계, 체중기, 냉장고, 타이프, 가습기, 청소기, (휴지통), 빗자루, (스포츠헌품), 화분, 여항, 탁구대, (필름-카메라), 삽-호미, 모종삽, 대빗자루, 세면도구, 비누, 다리미판, 사진, 바둑판, 오락기구, 도자기, (야외용 돗자리), (야외용 렌즈), 빨래비누, 목장갑, 위생비닐장갑, 이태리타올, 샤워타올, 전자사전

▶ 기타참고사항

문화와 관습이 다른 이국땅에서 처음에는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얼마 동안은 다음 사항을 염두해 주십시오.

- ① 항상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여권, 운전면허, CREDIT CARD)등을 지참한다.
- ② 식당이나 기타 장소에서 직접 서비스 받을 경우 계산시 항상 10% 정도의 TIP을 가산한다.
- ③ 줄을 잘 서고 남에게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④ ESCALATOR 탑승시 오른쪽으로 비켜서서 왼쪽으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십시오.
- ⑤ 현관 DOOR 사용시 당기는 쪽이 상대방쪽에 양보합니다.
- ⑥ 음식 드실때는 소리나지 않게 하고 여러사람 앞에서도 작은 소리로 이야기 하는게 좋습니다.

※ 끝으로 복된 이주생활이 되시길 빌면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문의하여 주십시오. 귀사의 공신력을 믿고 거래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S 코리아해운항공(주)은 복합운송 전문업체입니다.



해외 운송 안내서

▶ 이주전 준비사항(이삿짐 포장전 하실 일)

- 새로이 구입한 전자 제품이나 가구등 배달 일자 확인
- 신문, 우유 등 배달 취소
-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요금 미리 체크하시고 해지 신청
- 학생 서류 등 건강기록부, 국제면허증 등 준비요망!
- 등산용품, 청소기, 텐트, 신발, 자전거 등 먼지나 흙등 청소요망!
- 수리를 맡기신 물건이나 대여하신 제품등 미리 반납하시고 찾아놓으세요!

▶ 운송조건

- ① DOOR TO DOOR (IN SIDE) 가구셋팅
현지에서 추가비용 없음. 단, 세관검사시 세금 및 검사비용 발생
- ① DOOR TO PORT(항구까지)
발생비용 : 통관료, DDC, 취급료, 하역료, 운송료, THC, 관세 등 발생

▶ 포장시 주의사항

- 중요한 서류 및 귀중품은 미리 체크해서 비행기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
- 미리 가지고 가실 것 정리
- 고가구품은 체크해서 특수포장 요청
 - 책장에 있는 책은 책장에 두시고 안가지고 갈것은 미리 정리할 것
 - 양복, 양장은 정장박스에 포장하므로 그대로 걸어두시고 일반적인 티나 청바지는 한쪽으로 모아두시면 됩니다.
 -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주방그릇등은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음
 - 가구는 분해되는 것은 분해하여 포장 후 현지에서 조립해줌
안되는것(불박이 장농, 책장 등 복잡한 것은 안됨. 시간 지체됨)
 - 장류(고추장, 된장 등은 준비해 놓으시면 캔포장을 해줌) 만약 집에서 담은 장은 김장용 비닐을 준비하시면 좋음
간장은 PET병에 담아놓으시면 됩니다.
 - 서랍장등은 속내의, 양말 등으로 채워 놓으시면 됨
 - 전축등 복잡한 코드 연결된 것은 미리 견출지 체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현지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임)
 - 새로이 구입한 제품은 상표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음
 - 기타 궁금한 점은 문의하세요
 -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하루전 콘센트를 빼 놓으세요.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중요한 자료는 copy해 놓으시고 프린트 잉크, 토너는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삿짐 운송과정 안내

1) 견적 및 상담

- 작업 ORDER** • 본사 담당자 및 하주로 부터 서면 또는 유선으로 ORDER접수
 • (주재 발령자의 인적사항 및 부임지역 등을 통보 받음)
- 상 담** • 유선상담 : 이삿짐 운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
 → 목적국에 대한 운송 SCHEDULE, 현지통관안내 및 DOOR안내
 → 포장하기전의 사전준비 사항 및 포장방법에 관한 안내
- 견 적** • 탁송 물량조절을 위한 상담과 작업 환경등을 위한 필요에 따라 자택 방문함.

2) 국내운송절차(평균 약6~8일)

- 자 택 포 장** • 사전 예약된 날짜에 자택포장실시(오전 9:00시작)
 • 포장 : 폐사 직영의 포장 전문 기술자가 특수자재를 사용하며 포장완료
 • 포장시간 : 1일 완료 기준 (작업환경등 상황에 따라 2일 소요가능)
 • 고층 아파트 지역 : 폐사의 사다리차를 사용하여 하역
 • CONTAINER STUFFING : 현장에서(자택) = 컨테이너 작업완료(F.C.I)
- 경 부 운 송** • 포장이 완료된 화물을 컨테이너 및 트럭을 이용하여 사전 예약된 부산 C.Y로 보세운송
- 통 관** • 폐사의 부산지사에서 사전 준비된 통관진행
 • (수출 면장 발부)
 • (통관서류 : 여권, VISA COPY, PACKING LIST, INVOICE외)
- 보 험 가 입**
- 선 적** • 통관이 완료된 화물(컨테이너) 사전 예약된 선사에 선적 완료(선적 후 선화증권(B/L) 발급)

3) 해상운송 :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 향으로 운송

• 참 고 : 지역별 항해일수

PORT	항 해 일 수
미 주 서 부	약 12~13일(LA까지)
미 주 동 부	약 26~30일
일본, 중국	약 2일
동 남 아	약 9~12일
유 럽	약 28~30일
중 동 아	약 20~25일
남 미	약 35~45일

4) 현지 운송 SERVICE : 약 7일~10일

- ARRIVAL NOTICE**
- 도착통보 : KS 코리아해운항공(주)의 지사 및 AGENT에서 하주에게
 - 도착 및 통관에 관한 상담실시
 - 통관서류 준비 사항, 거주지확인, DOOR 날짜등 상담
 - 포장, 운송, 통관, 선적 DOOR SERVICE 과정은 폐사에서
 - 일괄 운송처리가 되므로 안심하시고, 목적지 자택에서 화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궁금하신 점이나 협조사항은 폐사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FAX로 연락주시면 회답하여 드리겠습니다.
- 목적지향 도착**
- 컨테이너 하역 및 WAREHOUSE(보세창고)로 운송
- 통 관**
- 위임통관 : KS 코리아해운항공(주)의 AGENT에서 사전 준비된 통관서류로 위임통관 (지역에 따라 하주 입회 통관하는 나라로 있음)
- 운 송(배달)**
- 통관이 완료된 화물을 자택으로 운송
 - (컨테이너 또는 트럭운송)
 - DOOR 조건 : 모든 화물을 집안까지 넣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중량품의 경우 제 위치에 SETTING)

5) 보험안내

1. 일반인일 경우

- 파손이나 분실을 대비하여 품목마다 가격을 산정해 주시면 보험부보를 대행해 드립니다. 이삿짐은 새 물건이 아니므로 개별 가격을 하주분께서 산정해 주셔야 보험회사에 부보가 가능하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작업당일 포장명세서에 BOX NO. 마다 보험)

2. 주재원일 경우

- 현재 각 회사 별로 사규에 의해 보험을 부보해 드리고 있으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마다 금액 한정이 있습니다. 초과될 경우 초과분의 보험료가 개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주의 CLAIM 접수 및 처리과정을 위임 대행함.
(CLAIM 액수가 고가일 경우 하주의 협조하에 처리)

하주께서 협조하실 사항

- 파손품 : 사진을 찍어 확인
- 분실품 : AGENT에서 분실확인서 발급

※ 기타 운송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특수 지역의 경우 개별 상담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해외이주화물은 장시간을 거쳐 운송을 요구하므로 포장, 운송기간 및 분실, 파손시 보상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한 후 운송방법 및 운송회사를 결정하여야만 비용절감은 물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착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중한 재산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며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정확히 운송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을 안내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회사의 선택

(1) “정부면허업체”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해외로 나가는 모든물품(수출화물, 이주화물)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해외로 반출되며 이 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절차를 밟는 일은 해운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한 업체에서만 가능하지만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함을 기회로 근년에 이르러 난립한 “부실한 무면허업체” 들이 정부면허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주화물의 분실, 파손, 선적지연 및 운임 과다 책정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본 업무의 미숙으로 반출화물이 반송되어 오는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위신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면허업체” 인지를 서울시 화물 운송과 또는 복합운송 주선업 협회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십시오.

확 인 처

- 서울시 화물 운송과 : TEL, 3707-9753/4
- 복합운송 주선업 협회 : TEL, 733-8000

(2) 회사의 “신용 및 공신력” 을 확인하십시오.

회사의 규모, 운영시스템, 해외지사 및 대리점 보유등 제조건을 고루 갖 춘 우량 업체로서 일괄 운송 시스템 즉, 포장 - 육상운송 - 통관 - 해상운송 - 목적지 통관 및 육상운송등 제반업무를 일괄처리하는 정부 면허업체에 화물 탁송을 의뢰하신다면 더욱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신속하게 처리되어 이주가족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저희 KS 코리아해운항공(주)은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대기업의 해외 주재원들의 해외전시 화물 및 이주화물을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운임이 싼 회사를 조심하십시오.

CBM당(부피) 단가가 터무니 없게 싼 경우는 결과적으로 부피를 속여 실제 화물 전체에 대한 운임 총액을 과다하게 지불하게 될 뿐 아니라 선적 지연 및 목적지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2. 포장(내포장 및 외포장)

근거리로 살림살이를 옮길 때도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가구나 부엌 살림살이는 쉽게 파손이 됩니다. 하물며 외국에까지 탁송할때는 이 분야에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인이 포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전문 포장인력을 보유하여 “직영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영공장이 없는 회사는 군소 포장업체에 “하청”을 주기 때문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여 분실, 파손시 보상 받으시기가 곤란하며, 특히 포장할 때 성실하게 작업을 유도할 수 없으며 운임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피 계산이 잘못되어 부당한 운임을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희 KS 코리아해운항공(주)은 자사 직영공장 및 우수한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이주화물이 파손이나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3. 부피 및 운임의 결정

(1) 부피 계산법

이주화물의 운임은 무게가 아닌 부피로 계산이 된다.

그 부피단위를 CBM(Cubic Meter) 이라 하며, CBM이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 Meter씩 인것을 말합니다.

즉, 3면의 Size가 1.5M, 1.2M, 0.8M이면,

총 물량은 1.44CBM입니다.(1.5×1.2×0.8 =1.44)

(2) 운임의 결정

운임 결정에 좌우되는 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국내조작료 : 포장, 국내운송 및 국내통관
 - ② 해상 운 임 : 부산항에서 목적지 세관 또는 Terminal.
 - ③ 현지 비 용 : 목적지 세관 또는 Terminal에서 현지 자택까지의 비용.
 - ④ 보 험 료 : 운송과정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부보금액의 약 0.9%)
- 즉 ①②③일 경우는 Door To Door이고, ①②일 경우는 Door To Port입니다.

4. 운송기간 및 선적

자택에서의 내포장과 저희 공장에서의 외포장 및 부산 출고등을 포함하여 포장일로부터 약 10일이 소요되며, 선박이 현지에 도착 하면 하주는 저희 현지지사 및 Agent와 통관 및 운송 일정을 조정하여 배달일을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지역의 항해일 수 및 주간 Schedule은 아래와 같습니다.

PORT	PERIOD	SCHEDULE	PORT	PERIOD	SCHEDULE
SYDNEY	13 Days	3Times/Mon	AUCKLAND	18 Days	3Times/Mon
MELBOURNE	15 Days	3Times/Mon	MANILA	5 Days	1Timee/Week
ANTWERP	27 Days	1Timee/Week	JEDDAH	25 Days	1Timee/Week
VANCOUVER	12 Days	1Timee/Week	SINGAPORE	8 Days	1Timee/Week
TORONTO	18 Days	1Timee/Week	KEELUNG	4 Days	1Timee/Week
MONTREAL	24 Days	1Timee/Week	BANGKOK	8 Days	1Timee/Week
XINGANG	3 Days	3Times/Week	FELIXSTOWE	25 Days	1Timee/Week
SHANGHAI	3 Days	3Times/Week	L,A	12 Days	1Timee/Week
HONGKONG	5 Days	2Times/Week	S,F	15 Days	1Timee/Week
LE HAVRE	28 Days	1Times/Week	CHICAGO	16 Days	1Timee/Week
HAMBURG	28 Days	1Times/Week	N,Y	28 Days	1Timee/Week
BREMEN	28 Days	1Times/Week			
JAKARTA	10 Days	1Times/Week			
YOKOHAMA	3 Days	2Times/Week			
KOBE	3 Days	2Times/Week			
P/KELANG	12 Days	2Times/Week			

※ 자세한 항해 일수 및 SCHEDULE은 당사에 연락을 하여 문의 바랍니다.

5.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이 선적되면 해운회사에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발급합니다. 이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을 대신하는 유가증권이며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정부면허업체만이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무면허업체에서는 자기 명의의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증권 발급시에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 (1) 수하인(CONSIGNEE)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가?
- (2) 목적지가 요구 하신대로 기입되어 있는가?
- (3) 부피단위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
- (4) 운임(FREIGHT)이 지불된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가?
- (5) 계약된 서비스 조건(DOOR TO DOOR 또는 DOOR TO PORT)이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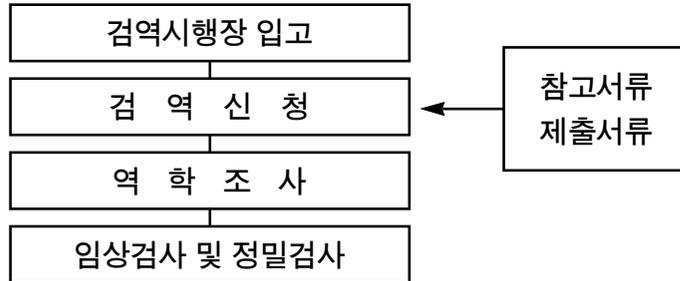
※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운송업체의 책임은 보세창고(CFS)까지로 한정됩니다.

6. 도착지에서의 절차

- ① 주선업체의 지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화물이 언제 도착할 것이라는 도착통지(ARRIVAL NOTICE)와 지불할 금액이 있는 경우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 ② 선적지에서 발급받은 선하증권 원본을 주선업체 지사 및 대리점에서 제출하시면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받게 됩니다.
- ③ 통관에 필요한 서류(여권, P/LIST, CUSTOMS FORM)를 세관에 제출하고 통관을 하시면 됩니다. 단, DOOR TO DOOR 고객의 경우는 지사 또는 대리점에서 통관을 대행해 드립니다.
- ④ 그 후 적절한 차량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시면 되며 이러한 모든 절차를 직접 하실수도 있으며, 주선업체의 현지지사 또는 대리점에 모든 절차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역 검사

수출동물검사



1. 검역시행장 입고

- 동물 검역소내 계류장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받은 검역시행장에 수출동물 입고

2. 검역신청

- 제출서류
 - 검역신청서 (동물검역소내 비치)
 - 예방접종증명서 (관계규정 또는 상대국과 협의된 사항)
 - 초생추 수출시에는 종란 생산 농장의 종계가 가축 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고 생산지 및 부화장내에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장 또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 사실 증명서
- 참고자료(검역관이 요구하면 검역 신청인이 제시하여야 할 서류)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진위여부 조사 또는 추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역학조사

- 검역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심사
- 각 시도가 축전염병 발생 통보에 의한 생산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여부의 조사
- 우리나라와 상대국간 협의된 사항(위생조건등)의 확인
- 기타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4. 임상 검사 및 정밀검사

- 임상검사는 임상학적 진단 방법에 의거 수입동물에 대하여 개체별로 일일 1~2회 확인 및 조사
- 정밀검사는 동물별 전염병 검사방법의 의거 실시
 - 미생물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혈청학적 검사
- 검역후 선, 기상 적재시는 검역실시 내용과 화물대조확인후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 적재 지시
- 검역을 필한 검역물이라 할지라도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적재할때까지는 검역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역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검역 실시
- 검역을 실시한 지소의 항만 또는 공항에서 선적확인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지소 관할항만 또는 공항 선적확인

세관통과시 질문사항 – 밴쿠버

Please complete the applicable section :

SETTLERS :

If you are a landed immigrant, please provide the date of your landing : _____

A Personal Effects Accounting Package(B4E) was issued at the time of your landing, please attach the original to this form.

FORMER RESIDENTS :

How long have you been absent from Canada? _____ (Years) _____ (Months)

Please provide proof of absence such as a letter from your employer, rental receipts, income tax returns etc., attached to this form.

Does any single item in your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exceed \$10,000.00 Canadian?

Have all the goods in this shipment been in your ownership, possession and use for at least six months before your return to Canada? If not, please specify which items : _____

TEMPORARY RESIDENTS - STUDENTS or WORK PERMIT :

How long are you staying Canada? _____ (Years) _____ (Months)

Are you importing a vehicle into Canada? Yes _____ No _____

If yes, please call 1-800-161-9999 for vehicle importation information.

Please provide a copy of your immigration visa attached to this form for verification of your status.

SEASONAL RESIDENTS :

Where is your permanent home? Country _____

Do you own or lease (for a minimum of three years) a seasonal residence in Canada?

Yes _____ No _____

If yes, what is the address _____

Please attach the original Personal Effects Accounting Documents (B4E) issued by Customs at the Canadian Border and copy of lease or deed.

BEQUEST :

For bequest, please submit a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 or Will showing you as the beneficiary of the estate, or a signed statement from the donor (executor) outlining the circumstances of the bequest.

Must be completed by importer :

I understand the ownership, possession, and use requirements and how they apply to the clearance of my goods.

I understand that it is a violation of the Customs Act to make a false declaration.

Signature of Importer

Witness

세관통과시 질문사항 – 토론토

Under Canadian regulations, you are required to inform CANADA CUSTOMS of ALL goods that you are bringing into Canada. This includes everything that you had with you at the terminals, goods that you clearing NOW and those goods which you intend to have shipped LATER (goods to follow).

	<u>YES</u>	<u>NO</u>
1. Have you provided CUSTOMS with a complete list / inventory of ALL goods you are importing now and intend to import at a later date?	_____	_____
2. Do you have any goods to follow at a later date?	_____	_____
3. Do you have any food items, meat or dairy products?	_____	_____
4. Do you have any plants or seeds?	_____	_____
5. Do you have any tobacco or tobacco products?	_____	_____
6. Do you have any liquor, spirits, wine or beer?	_____	_____
7. Do you have any firearms, weapons or swords?	_____	_____
8. Do you have any products made from pets, plants, meat or animal products?	_____	_____
9. Do you have any goods that belong to someone else?	_____	_____
10. Do you have any gifts or presents?	_____	_____
11. Are you importing any goods that you have never used(new goods)?	_____	_____
12. Are you importing any goods that have recently been professionally refurbished, cleaned or refinished?	_____	_____
13. Do you have any business material, professional goods, tools, commercial goods, goods for sale or samples?	_____	_____
14. Are you importing monetary instruments of \$10000 CAD or more?	_____	_____
15. Are you importing a :		
Motor vehicle	_____	_____
Boat	_____	_____
Motorcycle/Motorbike	_____	_____
Motor Home	_____	_____
Aircraft	_____	_____

***FOR FORMER RESIDENTS ONLY :**

Does any single item that you are importing exceed \$10,000 CAD in value?

Have you had use, ownership and possession of all goods, for at least 6 months, prior to importation to Canada?

IMPORTER'S DECLARATION

I have truthfully declared ALL my personal effects to **CANADA CUSTOMS** and understand that any items not declared or falsely declared may be subject to **SEIZURE ACTION**.

SIGNATURE : _____ **DATE :** _____

캐나다 일반정보

▶ 출입국시 유의사항

1. 캐나다는 우리 국민들에 의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어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움.
2. 그러나 일부 아국인들이 무비자 입국하여 현지에서 이민 수속을 하거나, 불법 체류 목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사례 및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최근 캐나다 당국은 아국인 여행자에 대해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
3. 아국인 단기 여행자들은 공항, 항만 입국 심사대에서 출입국 관리 직원들로부터 입국 목적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받게 되며,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 출신 통역원을 배치하고 있음.
4. 아국인 여행자는 여권과 항공권 등을 제시하고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친지 방문에는 캐나다내 친지의 연락처를 밝혀야 함.
5. 동 입국 심사시 체류지, 체류목적, 현지 연락처 등 개인 여행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입국하려는 자로 간주되어 이민 당국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고 귀국 조치될 수 있음. 입국이 거부된 후 당일 귀국 항공편이 없을 경우, 차기 항공편을 통한 출국시까지 이민당국이 제공하는 별도 숙박시설내에서 체류하게 됨. 다만 입국이 거부된 경우라도 캐나다내 여행자의 친지와 연락, 동 친지가 보증을 설 경우 임시 입국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보증금(사안에 따라 금액이 다르나, 통상 C\$1,000~C\$5,000)을 입국 관리 당국에 예치하여야 함.

▶ 체류시 유의사항

1. 캐나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정된 사회이기 때문에 체류에 어려운 문제는 없음. 그러나 금품 도난등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 사건이 증가되고 있어 주의를 요함(특히 차량 안에 귀중품을 방치하지 않도록 유의)
2. 캐나다인들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하여 친절하나 서구식 사상을 가진 캐나다인들 앞에서 우리식으로만 행동하여 반감을 사지 않도록 주의. 특히 음주, 흡연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함. 주류의 경우 구입도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야외 음주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 흡연의 경우 공공 건물이나 공동 사용 건물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벌금부과.
3. 여권분실 또는 도난시 가까운 아국 공관에 신고요망(분실 또는 도난 여권이 제3국인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음)

▶ 종교, 풍속, 법규, 관습유의사항

• 다음 행위는 금지됨

1. 야외 음주 행위
2. 공동 구역인 건물내에서의 흡연
3. 부녀자 희롱, 캐나다는 부녀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철저하여 우리 식으로는 농담을 한것이라도 체포될 수 있음.
4. 마약, 매춘 행위 금지(제공 및 요청한 자 모두 체포)

📍 긴급시 연락처

1. 캐나다는 체류 중 긴급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캐나다 당국이나 아국 공관에 연락을 취함, 본인이 원하면 한국어 통역이 나오므로 당황할 필요가 없음.

2. 각종 긴급 연락처

- 비상(화재, 도난 등) : 911
- 긴급 의료 구호 : 737-8000
- 경 찰 : 236-1222
- 기 상 : 998-3439

📍 재외공관 주소

1. 주 캐나다 대사관

- 주 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150 Boteler S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 전화번호 : 613-244-5010
- 팩스번호 : 613-244-5034

2. 주 토론토 총영사관

- 주 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555 Avenue Rd, Toronto, Ontario, Canada, M4V 2J7
- 전화번호 : 416-920-3809
- 팩스번호 : 416-924-7305

3.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 주 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1 Place Ville-Marie, Suite 2015, Montreal, Quebec, Canada, H3B 2CA
- 전화번호 : 514-845-2555
- 팩스번호 : 514-845-1119

4. 주 밴쿠우버 총영사관

- 주 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uite 1600, 1090W, Georgia street, Vancouver, B. C, Canada V6E 3V7
- 전화번호 : 604-681-9581
- 팩스번호 : 604-681-4864

🕒 기타참고사항

1. 대중교통

- 지하철, 버스, 전차 이용시 지정된 정류장(지하철 정류장)에서 토큰이나 티켓 구입.
- 현금 사용시 정확한 지정 요금을 내야 함. (규칙상 승무원은 거스름돈 등 현금 지참 금지)
- 요금 지불 후 승무원으로부터 Transfer 티켓을 받으면 추가 요금 없이 필요한 다른 교통 수단 이용 가능.
- 택시이용법 : 택시는 주로 콜택시(Call Taxi)제로 사전에 택시 회사에 연락, 호출해야 함. (간혹 노상에서 택시를 잡는 경우도 있음)
- 공항이나 호텔에 대기중인 택시 이용 가능.
- 관행상 요금 지불시 15% 정도의 팁을 주어야 함.

2. 쇼핑 영업시간

- 대부분의 상점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소규모 잡화상은 밤 11시까지 영업하기도 함)
- 일요일은 통상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

3. 주류판매

- 엄격히 통제되며, 정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포장된 병(또는 캔)으로 팔거나, 허가된 호텔, 식당 또는 술집(Bar, Pub등)에서 잔으로 판매
- 공공장소에서 행사를 위해 주류를 내놓으려면 특별허가 필요.
- 공원, 노상 음주는 불법

4. 판매세

물품 구입시 원가에 GST(연방정부 물품 용역세) 7%와 PST(주정부 판매세) 8%를 지불해야 함. 단, 식품등은 PST면제

5. 비상연락

사고, 강도, 도난, 화재 발생등 위난시에는 전화 911번이나 0번을 돌려 도움 요청

6. 렌트카(Rent Car) 운전시 주의사항

- "X" 표시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은 반드시 일단 정지해야 함.
- 국제 운전 면허증 소지자가 60일 이상 장기 체류 할 경우 온타리오 면허증을 받아야 함.
-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 (특히 엄격하므로 주의 요망)
- STOP 사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완전 정차해야 함. (특히 엄격하므로 주의 요망)
- 교통사고시 즉시 정차, 경찰에 신고해야 함.

7. 시차

- 캐나다내 지역시차 : 서부 밴쿠버 지역은 동부 오타와 수도권 지역보다 3시간 늦음
- 오타와(토론토)는 서울보다 14시간(썸머타임시에는 13시간) 늦음
 - ※ 예 : 5. 23 오타와(토론토) 오전 10시는 서울 오후 11시(썸머타임) 5. 23 오타와(토론토) 오후 5시는 서울 오전(다음날) 6시(썸머타임)
- 썸머타임(Summertime) : 4월 첫째주 일요일에 시간을 한시간 앞당기고 10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되돌려 놓음.

8. 전화 사용법

- 수도권내 : 전화번호(7자리)
 - ※ 오타와 613 B.C 604 / TORONTO 905, 416
- 미국 및 캐나다 장거리 : 1 + 지역번호(3자리) + 전화번호(7자리)
- 기타 국제 전화 : 011 + 국가 고유 번호 + 지역 번호 + 전화번호(7자리)
 - ※ 서울에 전화하고자 할 경우 : 011 + (한국) + 2(서울) + 전화번호
- 수화자 부담(Collect Call) 한국전화 1-800-663-0682

9. 공중전화 이용

- 시내 전화 요금 25센트
- 시 외곽 지역 및 장거리 전화시 전화 번호를 돌리면 교환수가 필요한 요금을 알려주며 이때 미리 준비한 동전을 넣으면 통화가능
- 수화자 부담(Collect Call)
 - 동전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0번을 돌려 교환수에게 Collect Call임을 알린 후 통화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교환수가 수화자에게 요금 부담 의사 확인후 연결시켜줌.

10. 전화번호 문의

- 거주지역 : 411
- 타지역 번호 : 1 + 지역번호 + 555-1212
- 국제전화번호 : 0

11. 우편업무

- 우편업무는 우체국은 물론 일반 상점에서도 취급합니다.
- 편지(Letters) : 캐나다 국내 43¢, 미국 49¢ 그리고 해외는 86¢와 무게로 결정합니다.
 - 소포(Parcels) : 기입 용지에 내용물과 가격을 적습니다.
 - 등기우편(Registered Mail) : 중요한 편지나 소포를 보낼 때
 - 속달(Fast Mail) : 좀더 빠른 우편배달을 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한국으로는 보통 2~3일 걸려 배달됩니다.

12. 캐나다 화폐

캐나다 화폐는 십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10센트가 열개가 1달러이며, 최소액의 동전은 1센트(1Cent)이며, '페니' 라고도 합니다. 기타의 동전은

- 5센트 짜리 동전 '니클' 이라고 함.
- 10센트 짜리 동전 '다임' 이라고 함.
- 25센트 짜리 동전 '쿼터' 라고 함.
- 1달러 짜리 동전 '루니' 라고 함.
- 2달러 짜리 동전 '투니' 라고 함.

※ 지폐는 '빌' 이라고 하며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및 1,000달러 지폐도 있습니다.

13. 전화번호부 사용법

전화번호부는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안내부, 흰페이지, 파란색 페이지와 노란 페이지입니다. 전화번호부의 첫 부분에는 장거리 전화를 거는 법, 긴급전화번호, 전화기 이상을 신고할 때 등에 관한 안내가 있으며, 또 하루중에서 몇시에 전화를 걸면 장거리 요금이 더 싸지도 알려줍니다. (요즘은 Bell Canada, AT & T, Sprit등 여러 장거리 회사가 있습니다.)

흰 페이지에는 모든 이름이 A, B, C 순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파란 페이지에는 정부 각 부처의 전화번호가 수록되어 있는데, 연방정부가 맨 처음 오고, 그 다음이 온타리오 주정부, 그리고 마지막에 시정부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노란페이지(옐로우 페이지)는 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의사, 변호사, 식당 등 업소별로 나누어지고 또, A, B, C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료제도

의료보험카드 신청(HEALTH INSURANCE) - (신청서 참조)

캐나다 도착 즉시 수혜대상자가 되며 의료보험 관할 사무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B.C. 주의 경우는 도착 후 3개월 경과된 후 혜택을 받음). 신청시 이민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및 영주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카드는 우편을 통하여 주소지로 배달됩니다. B.C.주에서 실시하는 의료보험을 Medical Service Plan)이라고 하며 의사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PS는 무료가 아니며 의료보험료는 매달 또는 몇 개월씩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가격은 독신, 두 가족, 또는 세 가족 이상일 때가 다르며 소득여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MPS Office로 연락하면 됩니다.

문의처

Vancouver ☎ : 688-3858 / Victoria ☎ : 386-8381
B.C.를 제외한 지역 ☎ : 1-800-663-7100

캐나다에 도착하신 후에 의료보험을 신청하실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의료혜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 3개월 경과 후부터 적용)

- 가정의사(Home Doctor)와 그가 지정하는 전문의의 진찰
- 임신부 검진
- X-RAY 검사와 시험실 검사
- 외과 수술 마취
- 검안 및 안과 치료 등

의료보험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실 수 없는 분들은 일반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여행사 또는 일반 보험회사)

- 위급시(Emergencies) :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아플때는 인근 병원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실로 가되 통역자가 필요한 경우 가족, 친지를 동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급차를 부를 때는 911이나 각 지역에 따라 다른 전화번호를 돌리면 되고 비용은 보험료에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후에 지불해야 합니다. (주정부 보조하에 운영거리에 따라 지불)
- 병원비(Hospital Costs) : 영주권자의 경우 병원비는 면제입니다.
- 의사의 종류(Types of Doctors) : 크게는 가정의(Family Doctor)와 전문의(Specialist)로 나누며 특히 가정의는 거의 모든 가정 건강관리는 물론 정신적인 문제도 보살펴 드립니다. 전문의는 주로 심장병 등 특수한 문제를 다루므로 병이 있다고 느낄때는 가정의의 지시에 따라 전문의를 만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가정의의 선정 (Finding a Family Doctor)
 1. 가족, 친지나 이웃들의 조언
 2. 이민 정착소에 연락하여 한국말을 하는 의사를 찾는 방법
 3. 병원에서 새 환자를 찾는 의사들의 명단
 4. 전화번호부에 있는 'Physicians & Surgeons' 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처방약(Prescription Drugs)**

약국(Pharmacy/Drugstore)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 약(Drug/ Medicines)을 판매하며 약사들이 투약횟 수, 기간등을 설명해 줍니다.

• **처방없이 살 수 있는 상비약(Non-Prescription Drugs)**

감기, 몸살, 배탈 등 경미한 병이 발생하였을때 의사 처방없이 인근 약국이나 식료품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정상비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방법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에 처방전(PRESCRIPTION)을 지참하시고 약을 구입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감기약	(COLD TABLETS)
종합감기약	(MULTISYMPATOM COLD PRODUSTS)
기침약	(COUGH REMEDY)
편도선	(SORE THROAT)
입술 터질 때	(COLD SORE / FEVER BLISTER PRODUCTS)
코 막힐 때	(NASAL DECONGESTANT)
입안이 험 때	(CANKER SORE PRODUCT)
두통약	(HEADACHE REMEDY)
설사약	(DIARRHEA REMEDY)

• **의약보험(Pharmacare Program)**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약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환불됩니다.

• **치과(Dentists)**

치과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자가 전액을 지불하든가 치과보험(PRIVATE DENTAL INSURANCE)의 계약 내용에 따라 지불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몇몇 직장의 경우는 고용주 소유하에 치과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Dental Clinics)**

거주지역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만성병약자는 방문간호, 물리 치료는 물론 식사 및 파출부, 가사정리를 도와 드립니다. 분만 준비와 신생아에게 예방 주사도 놓아 줍니다. 어떤 보건소에서는 치과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돌봐 줍니다.

• **시력검사/안경(Eye Exam and Eyeglasses)**

눈이 나쁜신 분은 가정의와 상담을 하거나 전화번호부 'Optometrists' 로 연락하면 됩니다. 시력검사는 보험(MPS)에 들어 있지만 안경은 돈을 지불하여야 하며 몇몇 직장에서는 회사가 안경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방주사접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등이며 어떠한 접종 후에도 접종 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 입학 또는 편입할 때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입니다.)

▶ 초, 중, 고등학교

구 분	재 원	학 비	입 학 조 건	관 할
공립학교 (PUBLIC)	주정부 (세금)	무 료	의무교육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시정부 (교육 위원회)
카톨릭학교 (CATHOLIC)	주정부 (세금)	무 료	의무교육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시정부 (카톨릭 교육 위원회)
사립학교 (PRIVATE)	개인등록금	\$5,000~\$15,000 (매 학년)	시험 및 면접	당해 학교

1. 공립학교(PUBLIC SCHOOL)

시정부에서 관할하며 6세이상 16세 이하의 취학 아동은 무료로 의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유치원(KINDERGARTEN)

학 년 : JUNIOR & SENIOR

취학연령 : 4~5세 (입학년도 12월 31일 기준)

학 기 : 9월 첫주 ~6월 마지막주

교육내용 : 유치원 과정

기 타 : 통상 유치원은 국민학교에 부설되어 있음.

•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학 년 : 1학년~8학년

취학연령 : 6세~13세 (12월 31일 기준)

학 기 : 9월 첫주 ~6월 마지막주

교육내용 : 초등학교 교육과정(영어, 수학, 과학, 역사, 불어 등)

기 타 : 이민 자녀 영어교육을 위한 특별 영어반(E.S.L.) 제도가 있기도 함.

•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 OR COLLEGATE)

학 년 : 9학년~12, 13학년

취학연령 : 14세~제한 없음

학 기 : 9월 첫주 ~6월 마지막주(통상 6월 2째주부터 학기말 고사기간임)

교육내용 : 취업 및 대학진학(대학 및 전문대)을 위한 과정으로 분류

기 타 : ① 전문대 진학코자 하는 학생은 12학년(OSSD)을 수료하여야 진학자격이 주어짐. OSSD는 9학년~12학년까지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30과목중 16학점은 필수, 14학점은 선택 과목)

② 대학에 진학코자 하는 학생은 12학년 수료증서(OSSD) 및 O.A.C.(13학년) 과목 6학점을 포함 총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이공계 및 인문계에 따라 과목이 다름)

※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외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립학교인 경우 연\$6,000정도의 학비를 내도록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일반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도록 되어 있음.

2. 천주교 학교(CATHOLIC SCHOOL)

학제는 공립학교와 같고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모중 1명 이상이 천주교 신자여야 함.(영세증명서 제시 요구) METROPOLITAN TORONTO에는 약 190여개의 유치원, 국민학교(유치원~8학년) 및 36개의 고등학교(9학년~13학년)가 있음. 학교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복비용은 학생 부담임.

3. 사립학교(PRIVATE SCHOOL)

학 년 : 유치원~13학년까지(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취학연령 : 4~18세

학 기 : 매년 9월 첫주~6월 마지막주까지(학교마다 조금씩 다름)

학 비 : 년 평균 \$5,000~\$15,000

입학자격 : 시험 및 학생 면접

교육내용 : 유치원 과정

기 타 : 온타리오주내에는 약 65개의 사립학교가 있으며, 남녀공학 및 남녀 분리 학교가 있음. 모든 학교의 관할은 당해 학교가 직접함으로 학교를 선택할 경우 학교의 전통과 특성을 파악하여야 함.

※ TORONTO의 명문 사립학교 : UPPER CANADA COLLEGEATE

U.T.S.(TORONTO 대학 부설 고등학교)

◎ 대학 및 전문대학

1. 정규 대학교(UNIVERSITY)

재 원 : 주정부 세금 보조 및 학비 징수

학 비 : 약\$2,500~\$3,500

학 기 : 매년 9월 첫주~5월 첫주(4월 중순부터는 학기말 고사가 실시됨)

입학절차 및 자격 : 고등학교 졸업증 및 내신성적

- 온타리오주 경우 13학년 (O.A.C.) 내신성적
- 퀘벡주 경우(C.E.G.E.P) 내신성적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은 TOFEL 성적제시 요구(통상 580점 이상)

2. 전문대학(COLLEGE)

TORONTO 지역에는 4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각 전문대에는 여러개의 분교가 있음.

전문대학에는 졸업증이 학위증과 수료증으로 나뉘어짐.

입학조건 : 고등학교 12학년(OOSD) 수료자 및 연령 19세 이상인자, 수학, 영어 시험에 통과한 자

학 기 : 봄, 여름, 가을 3학기로 나뉘어짐

학 비 : 1년 학비 평균 \$1,200

▶ 캐나다 주요대학

학 교 명	소 재 지	설 립	학 생 수	년 평균 학 비	특 징
BRITISH COLOMBIA	VANCOUVER, BC	1908	30,000	\$2,600	자연과학
VICTORIA	VICTORIA, BC	1903	15,000	\$2,500	인문과학
MCMASTER	HAMILTON, ONT	1887	15,000	\$2,600	문리대, 의대
QUEEN' S	KINGSTON, ONT	1841	13,000	\$2,500	자연과학 인문과학
PYERSON POLYTECHNICAL INSTITUTE	TORONTO, ONT	1948	12,000	\$2,500	인문과학
GUELPH	GUELPH, ONT	1964	12,500	\$2,400	세계수준의
TORONTO	TORONTO, ONT	1827	53,000	\$2,700	캐나다 최대 종합대학 MBA
WATERLOO	WATERLOO, ONT	1956	27,296	\$2,300	수학, 전산학과
WESTERN ONTARIO	LONDON, ONT	1878	28,000	\$2,900	MBA, 의대

직업(JOB)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기본 서류들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출생증명서, 졸업장,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추천서(영문이나 불문), 영주권, 운전면허증 등이 필요하며 인터뷰시 지참하면 되며 복시는 해줘도 되지만 원본은 주지 마십시오.
- S.I.N(Social Insurance Number)이 있어야 일을 하며 이민정착소에 연락해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이민자를 위한 특별 세미나가 개최되기도 하며 자세한 문의 전화는
Business Immigration Branch : 629-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E1
☎ : (604)844-1800

7th Floor, Hearst Block : 900 Bay Street Toronto, Ontario M7A 2E1
☎ : 1-800-387-6142
- 노동시간과 시간외 근로 : Full Time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만약 시간외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최소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더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은 항시 수표(Check)로 지불됩니다.
- 공제(Deduction) : 고용주는 임금지불시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제를 합니다.
Canada Pension Plan(CPP) Unemployment Insurance(UI)
매달 공제되며 퇴직 후 또는 직업을 잃으면 살 곳을 제공받거나 일정의 돈을 받기도 합니다.
- 최저임금(Minimum Wage) : Full-Time과 Part-time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최저임금은 18세 이하 학생의 경우 최저 \$5.50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6.0로 B.C.주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 휴가(Vacation) : 모든 노동자는 1년에 적어도 2주 휴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공휴일(Holidays) : 주에 따라 약간의 변동도 있습니다.

1월 1일	New Year's Day
부활절전 금요일	Good Friday
5월 24일 이전 월요일	Victoria Day
7월 1일	Canada Day
8월 첫째 일요일	B.C. Day
9월 첫째 월요일	Labour Day
10월 둘째 월요일	Thanksgiving
11월 11일	Remembrance Day
12월 25일	Christmas
- 실직했을 경우(Losing Your Job) : 본인이 회사에 악영향을 미칠 때 해고를 제외한 경우 고용주는 여러주 전에 고용인에게 통보해야 하거나 고용인이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일정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캐나다 주택정보

주택은 크게 임대(RENT)와 매매(BUY & SELL)로 나뉩니다. 이민하실 모든 분들은 주거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실 줄 압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은 현지사업과 교육적인 거리 등 유망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특히 현지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와 현지인들의 조언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의 형태에는 단독주택(HOUSE), 아파트(APARTMENT), 타운하우스(TOWN HOUSE), 콘도미니엄(CONDOMINIUM), 듀플렉스(DUPLEXE), 모빌홈(MOBIL HOME)등이 있습니다.

(1) 아파트(APARTMENT)

보통 방이 1~2개 정도되며 부엌, 목욕탕 그리고 응접실로 나뉩니다. 방 하나에 취사 및 욕조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Studio나 Bachelor라 합니다. 광고란의 '세 놓습니다. (Suits for Rent)' 는 주로 아파트 또는 가정집을 말합니다.

(2) 듀플렉스(DUPLEXE)

임대 또는 매매가 되며 한 집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 타운하우스(TOWN HOUSE)

독립된 작은 집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연립주택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4) 콘도미니엄(CONDOMINIUM)

흔히 콘도라 하며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식으로 흔히 매매에 의해 거래가 됩니다.

(5) 모빌홈 (MOBIL HOME)

이동식으로 집을 놓을 대지를 사거나 렌트하셔야 합니다.

- 개인주택 또는 아파트를 렌트(RENT) 하실 경우 : 현지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 FOR RENT 또는 VACANCY 사인이 붙어 있는 집,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지역회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광고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 고

- ① Room for Rent나 Shared Room은 사람들이 방을 쓰면서 취사시설과 목욕탕 등을 서로 같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Room & Board는 가구가 설치되어 있는 방과 식사를 줍니다. (하숙)
- ③ 집주인이 세입자의 인종, 피부색깔, 나이, 출생지, 종교, 성별, 결혼의 유무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애원동물 소유자 또는 흡연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주소로 연락을 하십시오.

• B.C. HUMAN RIGHTS COALITION :

718-774 WEST HASTINGS ST. VANCOUVER, B.C.V6C1A5 ☎ : (604)689-8474

• B.C.COUNCIL OF HUMAN RIGHTS VANCOUVER :

406-815 HORNBY ST. VANCOUVER, B.C. V6Z2E6 ☎ : (604)660-6811

• **B.C.HOUSING** : 주정부에서 세를 주는 낮은 가격의 아파트나 타운하우스로 노인들 또는 중·저소득층을 위해 줍니다. 자격조건은 최소 1년 이상 B.C.주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택 Rent문의는

SAFER(Shelter Aid for Elderly Rent) : Vancouver ☎ : 660-1551

Victoria ☎ : 953-4165

국내 모든 지역 ☎ : 1-800-661-9552

• 다음 몇몇 질문들은 집을 임대하실 때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질문입니다.

- ① 월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e rent?
- ② 공공요금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야 하나요?
Are utilities included in the rent or do I have to pay for them?
- ③ 손실보증금은 얼마입니까?
How much is the damage deposit?

• 다음 단어들은 캐나다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관련 용어들입니다.

- ① **임대계약(Tenancy Agreement)** : 집 또는 아파트를 구할 때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지켜야 할 항목들과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 ② **입주(Moving in)** : 전기, 가스, 전화신청, 케이블 T.V를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지역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쓰레기 수거일자를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분리수거를 함)
- ③ **집수리(Repairs)** : 세입자에 의한 파손을 제외한 것 외에는 집주인이 직접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24시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적절한 이유를 들은 후(예외 : 화재시, 파이프 고장시 등)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집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 ④ **퇴거(Eviction)**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적절한 이유가 있을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퇴거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시 전화는
 - Teants' Rights Action Coalition : Vancouver ☎ : 255-0564
 - Vancouver를 제외한 지역 ☎ : 1-800-665-1185
- ⑤ **이사할 때(When move out)** :
 - 사전 통보는 통상 이사하기 최소 1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화와 전기 등의 취소
 - 주소지 변경 : 운전면허증, 은행, 학교, 의료보험 기타 등등
- ⑥ **집 살때 (Buying a house)** :
 - 전화번호부 'Real Estate' 란에 있는 부동산 회사를 통하여
 - 은행대부를 이용(Mortgage)한 구매
- ⑦ **보험(Insurance)** :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한 집, 귀중품손실을 방지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 양로원 수당(Rest Home Subsidy)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살고 있으며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거나 노후연금으로 지불하고도 부족할 경우엔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소득과 다른 자산여부를 조사한 후에 지불된다.

▶ 과부수당(Widow' Benefit)

남편이 사망하고 과부가 된 경우 캐나다에 살고 있는 미망인에게 지불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부인이 죽고 남편만 생존하는 경우 홀아비에게는 수당이 없다.

▶ 장례비용(Funeral Grants)

개인의 소득과 다른 자산 소득이 있는지를 평가한 후 장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장례비용이 지불된다.

▶ 병자수당(Sickness Support)

영주권자로서 24개월 이상 체류한자로 16세 이상의 사람이 질병이 있어 아프거나 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수당이 지급된다.

▶ 병자수당(Invalid' s Benefit)

중병환자, 만성 영구적인 병자, 사고, 지체부자유자, 장님 등 일을 할 수 없는 자로서 16세 이상이며 캐나다에 10년이상된 사람에게 지급된다.

▶ 직업교육 보조수당(Training Benefit)

16세 이상의 나이로서 직업을 갖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지급된다. 예를들면 Access Training Courses등이 해당된다.

▶ 가족수당(Family Support)

영주권자로서 24개월 이상 체류한자로 연간 소득이 NZ\$18,000불 ~ 27,000불 이하의 저소득자로 16세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불된다. 각종 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안에 가족수당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 가입자는 공립병원에서는 치료, 의약품, 임신부시술 등을 무료로 실시하며 개인병원도 정부 보조를 받아 진찰료는 50%, 처방액은 무료이다.

➡ www.ikea.ca

캐나다의 대형 중저가 가구 매장의 site로서 침대, 소파, 책상등을 한국에서 구입하실지, 캐나다에서 구입하실지를 결정하실 때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 www.sportchek.ca

사무용품 및 학용품 대형 매장의 site입니다.

➡ www.sportchek.ca

스포츠 의류, 신발, 도구등을 취급하는 대형 매장의 site입니다.

➡ www.homedepot.com / www.canadianfire.ca

집에 관한 모든 것을 취급하는 매장의 site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입니다.

➡ www.daimlerchrysler.ca / www.ford.ca / www.honda.ca / www.kia.ca / www.hyundai.com

자동차 site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주 통관 안내

▶ 미주 통관 안내

미국 이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지역 이주화물의 대부분의 경우 서류통관으로 진행이 되며 INSPECTION의 경우 세관에서 RANDOM하게 CONTAINER를 지정하여 X-RAY 및 정밀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내 안보 문제로 인하여 빈도수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식비자(유학, Working 비자 및 영주권 등등)로 이사집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타국가에 비해 비교적 통관이 용이한 편입니다.

▶ 반입금지 품목

- 마약 및 총기류(칼, 검등)
- 한약, 한약재
- 피혁, 동물박제, 상아, 뿔류
- 농산물(쌀, 밀가루, 콩등), 곡류 종자(콩류, 씨앗류 등)
- 낙농제품(치즈 및 관련제품) 및 육류제품(날고기, 건조육류)

▶ 반입주의 품목

- 술, 담배 : 술과 담배는 세율이 높으므로 한국에서 구입하여 가져도 현지 가게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결코 싸지 않음을 유의하세요. 반입하다 발견되면 벌금 및 본인의 이름으로 얼마간 수출, 입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입, 출국에도 불이익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등, 대나무 가구 : 미생물이나 세균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니 깨끗이 청소후 건조해 주세요.
- 진공청소기 : 기존에 사용하시던 먼지 주머니는 버리고 새주머니로 준비하세요.
- 자전거, 텐트, 골프채, 신발 : 혹시 묻어 있을지 모를 흙이나 모래를 잘 제거해 주세요. 흙이나 모래에도 미생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반입 가능한 한국식품

- 된장과 고추장
- 조선간장, 왜간장
- 고춧가루, 조미료, 참기름
- 라면
- 굵은 소금
- 냉면, 국수류
- 화장지
- 생리대
- 빨래비누
- 건어물(미역, 김, 오징어채, 멸치 등등)
- 양말, 속옷
- 문구류

뉴질랜드, 호주 일반정보

• 교통수단

- 주요 도시간에는 항공,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전국적인 고속도로망은 없고 왕복 2차선의 국도 규모 도로로 연결되어 있음.
- 남북섬간에는 Ferry가 운항되며 배에 따라 1시간반에서 3시간이 소요됨.

• 통신 및 전화제도

-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공중전화는 그리 많이 설치되어 있지 못함.

• 우편제도

- 국내, 국제 우편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Courier Service가 보편화되어 있음.

• 공공요금

- 전기, 전화요금은 한국 수준과 비슷
- 수도요금은 임차 주택의 경우, 임차주가 부담

• 주재국 언론매체

- TV 채널 : 4개국 (국영 2개, 민영 2개)
- 유선 TV : SKY TV, Saturn
- 일 간 지 : 웰링턴 발간 Dominion(조간), Evening Post(석간), 오클랜드 발간 NZ Herald등
- 주 간 지 : National Business Review등

• 교포언론

- 라디오 방송 : 3개
- 신문,잡지(매, 격주) : 7개

• 한국신문 구독 가능성

- 일반 가정에서의 구독은 오클랜드 소재 교포지사 통해 구독 가능 (3~4일정도 소요)

• 한국과의 시차(섬머타임 여부 포함)

- 아국보다 3시간 앞서감
- 섬머타임 실시시간(10월 첫째주 일요일 - 다음해 3월 셋째주 일요일)중 우리나라와 4시간 차이

• 환전

- 시중은행을 통해 자유롭게 환전 가능, 원화와의 교환은 불가능
- 환율은 변동환율제 채택

• 은행, 우체국, 식당, 상점, 박물관 등 영업시간 및 휴무일

-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무실은 09 : 00 ~ 17 : 00(평일)이 일반적이며, 상점의 영업시간은 09 : 00 ~ 17 : 00(평일), 09 : 00 ~ 15 : 00(토, 일요일), 은행은 9 : 30 ~ 16 : 30까지임.

• Tip제도

- 팁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음.

• 이사회물

- 전기 및 가전 제품
- 현지 TV 및 Video 방식 : PAL B/G방식
- 현지 전기시스템 : 240V / 50HZ

- 한국 전자제품 현지 사용가능 여부
 - 전압과 주파수가 아국과 다르므로 겸용이 아니면 사용시 문제 발생
 - TV와 VTR은 방송방식의 차이 (B/G방식)로 국내제품 사용 불가능
 - 플러그의 형태가 국내제품과 다르므로 사용시 현지용 플러그 부착 필요
- 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히 이사물품에 “휴” 이 문어있을 경우 통관 불허

· 가구, 비품 및 장식품

- 국내와 비교하여 가격이 비싼편임.

· 기타 필요물품

- 여름철에 강한 햇볕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기 쉬우므로 썬크림 등 피부관련 의품이 필요

· 기후 및 의복

- 남반구에 위치, 모든 것이 한국과 반대임. 일례로 북향집이 한국에서의 남향집과 같이 겨울에 햇볕을 많이 받고 여름에 시원함.
- 여름은 보통 최고 25도를 넘지 않아 아국의 여름에 비해 기온은 낮은 편이나, 겨울(웰링턴은 비바람이 많음)은 강우량이 많으며,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체감 온도가 낮아 겨울 의류 구비 필요(웨터, 파카, 바바리코트등)
- 겨울철 전기히터 등 난방기와 제습기가 필수적임.

· 식품류

- 농산물, 농제품이 풍부하며 가격이 저렴함
- 한국식품은 현지 한국식품점을 통해 구입 가능

· 운전면허증

- 현지에서 국제운전 면허증 1년간 통용 가능
- 우리나라 면허증 상호인정이 안되므로 현지에서 면허시험(필기 및 실기)을 거쳐 취득해야됨.

🕒 출입국관련

· 통관제한품

- 음식류, 동, 식물류, 휴이 묻은 물품(특히 캠핑장비, 골프클럽, 저전거 등), 무기류 비디오 테이프
- 낙농제품, 민물생선, 육류제품, 화환 및 화환재료, 식물 배양균, 미생물, 마약등

· 정변, 국지적 분쟁 및 천재지변에 따른 안전 관련 사항

- 지진대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역사적으로 큰 지진이 있어 왔음.
- 최근 들어, 특히 강도, 도난 사건등 범죄가 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여행 위험 지역은 없으며, 단지 미개발 자연지대가 많아 길을 잃는 외국인이 종종 있음.

· 테러경보, 테러그룹 및 테러형태, 테러다발지역 기타정보

- 원주민 마오리족의 일부 그룹이 백인을 포함한 이주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나 테러를 우려할 수준은 아님.

· 치안관련 범죄유형 및 공항, 호텔, 버스터미널 등 장소에서의 유의사항

- 최근 범죄 유형은 절도, 강도, 어린이 성폭행 등이 가장 많음.
- 주의할것은 밀수 및 마약 단속이 엄격하므로 공항등지에서 타인의 짐 또는 소지품 따위를 부탁받아 운반해 주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함.

• 각종 단속 법규관련 유의사항

- 체류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며 체류기간은 여권의 비자란에 표시되어 있음.
연장시는 이민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함.
- 마약 밀반입 적발시는 즉시 구속되며, 관세품 은닉, 허위신고 및 허위문서는 물품 몰수 및 벌금형에 기소될 수가 있음.
- 무사증으로 입국하려는 유학생의 입국 거부 사례가 있는 바, 유학생의 경우 사전 학생사증을 발급 받은 후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체류시 유의사항

- 우범지역, 사진촬영 제한구역 기타 여행제한 또는 삼가 요망 지역
 - 특정 우범지역은 없음. 다만, 오클랜드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 범죄가 반발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
 - 사진 촬영 금지구역은 사진촬영 금지 팻말이 붙어 있음. 관공서 등은 입구에서 미리 안내를 받음 (예 ? 국회 의사당 입장시에는 카메라를 리셉션에 맡기게 함.)
- 여행제한, 자제 요망 지역은 특별히 없고, 급작스런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운전중에는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수가 있음.
- 음주운전, 과속운전에 대한 법규가 엄격하므로 주의해야 함.
- 낚시를 할 경우는 자원보존청에서 정한 규정을 사전에 숙지한 현지인 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의 도움을 받아 규정된 어종별 수량을 초과하거나 크기 미달의 물고기를 잡아 벌금형 또는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함.
- 관광 무사증 입국협정 체결 국가로 3개월간 무사증 관광 입국이 가능하나 반드시 귀국 비행기표를 소지하고 입국 목적이 관광, 방문이어야 함.

📞 긴급시 연락처

- 경찰, 화재, 구급 : 전화번호 111

🗨 기타

• 종교, 풍습, 관습, 국민성에 관한 유의사항

- 종교는 다양각색이며 성직자의 결혼을 허락하는 영국 성공회가 많음.
- 차를 많이 마시는 국민이라 직장에서도 두차례 정도의 Team Time이 있고, 철저한 핵가족 주의라 개인 생활 존중, 인사는 유렵인들은 악수, 가벼운 포옹, 마오리 원주민들은 “홍이”라고하여 코를 서로 맞댐.
- 국민성은 일반적으로 아주 우호적이고 밝으며,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편임.

• 주요 공공요금

- 우표 : 국내(규격 <소봉투>) 우편은 40센트임
국제우편 (뉴질랜드 - 한국), 규격(소봉투) 우표는 NZ\$ 1.5이며 규격엽서는 NZ\$ 1.00임
- 시내버스요금 : 구간별로 요금을 책정 기본요금 \$1.00부터 시작
- Day Tripper(\$5.00)는 당일내 언제 어디서든지 탑승하차가 가능하여 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함.
- 공중전화 : \$5.00권, \$10.00권, \$20.00권 정액카드기 있으며, 동전 전화보다는 카드를 사용하는 전화가 많이 있으므로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편리함.

• 호텔

-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등 대도시에 특급호텔 및 모텔등이 잘 발달되어 있음.
- 등급별 숙박료 현황

교육 제도

교육제도

- 1877년 최초로 교육법을 제정,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도입한 이래 1964년 교육법(Education Act 1964) 개정을 거쳐 현재 만6세부터 15세까지 전국민 의무교육 실시.
- 교육법상 최고의 교육행정 기관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이나 교육부는 국민 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 설정 및 교육행정 지침 수립이 주요업무이고 실제 교육행정은 각 지역 또는 목적별로 설립된 해당 위원회가, 학교 운영은 각 초, 중등 학교별로 교장, 교직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학생대표로 구성된 Board of Trustees가 관장하는 교육 자치제도 시행

교육기관수 및 학생수

- 취학전 교육기관 : 3,918개, 16만명
- 초 등 학 교 : 2,345개, 47만명
- 중 고 등 학 교 : 439개, 24만명
- 대 학 교 : 7개, 10만 6천명
- 전 문 대 학 : 25개, 9만 4천명
- 사 범 대 학 : 4개, 1만2 천명

뉴질랜드 학제(초, 중, 고등학교)

	연 령	학 년	Year	비 고
Primary School	5	5	Junior 1	대개는 Primary 학교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학교로 설치되어 있기도 함.
	6	6	Junior 2	
	7	7	Stanndard 1	
	8	8	Stanndard 2	
	9	9	Stanndard 3	
Intermediate	10	10	Stanndard 4	
	11	11	Form 1	
Secondary School (College, Highschool)	12	12	Form 2	
	13	13	Form 3	
	14	14	Form 4	
	15	15	Form 5	
	16	16	Form 6	
	17	17	Form 7	

각급별 학교기관

- Primary School
 - 만5세가 되는 생일에 맞추어 입학한다. 뉴질랜드의 초등학교는 주니어 1~2학년과 Standard 1~4과정이 있으며, 영어, 미술, 건강, 산수, 음악, 체육, 과학 및 사회등이 교과과목에 포함.
- Intermediate School
 - 동학교는 Standard 4를 이수한 만 11~12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초등학교에서 계속 이 과정을 교육
- Secondary School
 - From 3~7는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며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공예, 체육등의 필수과목 이수

-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1:1.7이며 학생들의 반구성은 Form 3이나 Form 4는 30명 정도이며 상급과정의 반은 적은 수로 구성, 학기는 2월에서 12월까지 40주를 교육하며 4학기로 구성.
- Form 5 학생들은 국가시험을 치르는데 소위 중학교 졸업시험으로서 졸업시험에 따라 Form 6의 진학가능. 또한 Form 7를 마칠 무렵 최고 6개 과목에 걸쳐 다시 졸업시험을 치르며 성적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장(High School certificate) 수여.
- 종합대학교 또는 사범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Form 7과정의 말에 치르는 국가 시험(University Entrance, Bursary & School Certificate)수여.
- 11월 중순에서 12월사이 Form 7 (13학년)을 대상으로 치루어지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Form 7 이전에도 동 시험에 응시 가능

• **Polytechnics and Private Teritary Institutes**

- Form 6 과정을 마치게 되면 Polytechnics 학교나 Private Teritary Insutitutes에 입학할 수가 있는데 이들 학교는 우리나라의 전문학교와 비슷
- Degree과정과 Diplomas과정 그리고 Certificates 과정으로 나뉘어 학업을 하게 되며 학업기간도 6개월에서 3년까지 다양.
- Degree과정의 경우는 일반대학의 Degree 과정과 동급으로 취급이 되어 졸업후 일반 대학의 Post Graduate Diploma(준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고 Master Degree(석사과정) 그리고 Doctorate(박사과정)까지 이수 가능.
- Diplomas 과정과 Certificates 과정을 이수하면 대학의 Bachelors Degree나 Teaching Diploma(교직자 과정)에 편입하여 이들 과정들을 이수 가능

• **University**

- **대학교 입학요건**

국가고사(Bursary Exam) 성적으로 각 대학에 지원,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보통 3~5개 과목 (응시자의 선택에 의해 때로는 5개 과목 이상) 응시하며 최소한 3개과목이 C점수 (50%)이상이면 입학가능. 법대, 의대등은 A-Bursary 중에서도 고득점을 요구, 보통 5개 과목을 기준으로 과목당 100점씩 500점 가운데 250점 이상을 득하면 B-Barsary, 300점 이상을 득하면 A-Bursary로 분류.

- 유학생의 경우 TOFEL, IELTS등의 영어시험에서 수학능력이 가능한 점수 요구(예 : TOFEL은 550점 이상)

- **7개 국립종합대학교**

대 학	설립년도	소 재 지	대표학부
University of Auckland	1883	Auckland	건축, 공학, 법률
Victoria University	1899	Wellington	행정, 건축
University of Canterbury	1873	Christchurch	임학, 공학
University of Otago	1869	Dunedin	약학, 치과
Massey University	1961	Palmerston North	농 학
University of waikato	1963	Hamilton	공 학
Lincoln University	1990	Christchurch	농 학

※ 유관사이트 : www.educationnz.or.nz / www.minedu.govt.nz

뉴질랜드는 능력 있는 기술자와 소질 있는 이민자들을 대 환영한다.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얻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일이다. 뉴질랜드의 고용 시장은 금융 서비스, 판매업, 산림업등 최근 성장을 이룬 산업을 포함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비교적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2000년 11월 노동당의 조사에 의한 실직자 비율은 5.9%이다.

🔍 자신의 기술과 능력 활용

더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다양하고 폭넓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어떤 고용자들은 사원을 고용할 때 뉴질랜드에서의 직업 경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로서, 영어를 구사할 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뉴질랜드의 인력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가끔 해외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는 고용주도 있다. 뉴질랜드는 NZQA라는 자격인증기관이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뉴질랜드에 오기전에 담당기관으로부터 자격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교육을 더 받는 것도 현명한 일이며, 시스템도 잘 구성되어 있다.

🔍 전문직 종사자

무역업이나 전문적인 직업(전기기사, 배공관, 의사 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기 원하면 반드시 등록을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직업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른 카테고리리를 가지고 있다. 혹, 자신의 직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대개 현지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더 받아야 하며, 자격증이 요구되는 경우 현지에서 획득해야 한다.

🔍 평균수입

아래의 표는 뉴질랜드의 직업별 평균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대략적으로 나타내어진 것이며, 수입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 고용주의 고용정책, 그리고 고용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Occupation	NZ\$ before Tax
Legislators, administrator \$ managers	20,22
Professionals	20,11
Technicians & associate Professionals	17,35
Clerks	13,80
Services & Sales Workers	10,93
Agriculture & Fisheries Workers	11,61
Tradees Workers	14,97
Plant & machine operators & assemblers	13,73
Elemntary occupations	10,66
※ Industry Group	
Agriculture, hunting, foredtry & fishing	12,16
Mining & quarrying	16,60
Manufacturing	15,64
Electricity gas, water	19,35
Building & Construction	14,38

Wholesale & retail trade	12.20
Transport, storage & communication	16.59
Business & financial service	17.32
Community, social & personal services	16.11

※ Average Weekly Earnings

Males	706.20
Females	548.42
Employed labour force	633.57

🔍 구직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에는 구인란이 있다. 대도시(오�클랜드, 웰링톤, 크라이스트처치, 더니든)의 신문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의 에이전트나 전문적인 직업 소개소들은 직업 광고를 위한 자신들만의 고유 책자를 만들기도 한다. 개인 사설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직업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맥을 통한 경우가 빠르고 정확하다.

🔍 자기소개서(curriculum vite)

구직을 의뢰하기 전에 자기 소개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그 서류를 통해 면접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CV는 자신의 직장 경력이나 경험, 자격 등을 간단하게 서술하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추천인 또는 보증인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납세의무

뉴질랜드에 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현지와 해외를 포함한 모든 수입에서 세금을 내야한다. 은행에서 부여한 개인 IRD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정부 기관이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주들은 그들의 수입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주기도 한다. 혹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금을 두번씩 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1999/2000년의 세금 금액은 년 소득이 \$38,000미만이면 19.5cent/dollar, \$38,000이상이면 33 cent/dollar이다.

- 뉴질랜드 인권, 정책에 대한 추가정보 : <http://www.hrc.co.nz>
- 뉴질랜드 노동, 직업에 대한 추가정보 : <http://www.dol.govt.nz>

주택정보

뉴질랜드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 중 자기 땅에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으뜸이라고 한다. 이를 “Quarter-Acre Paradise” 라고 한다.

▶ 주택의 구입

보편적으로 부동산 회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편이고 주택 매매인 경우는 한국인 부동산 중개인의 활발한 활동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여러 정보를 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의 구입은 일정 기간 경과 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만약 1주일의 주택 임대료가 가구당 \$3000이 초과 한다면 구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주택을 구입하려면

임대와 마찬가지로 신문을 통한 방법, 부동산 회사를 통한 방법, 또는 부동산 전문 판매 정보 회사인 <http://www.realenz.co.nz>을 통한 정보의 취득을 권하며, 최종적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동반하여야 된다.

▶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는 19세기 Colonial 식의 Villa에서부터 현대식 Apartment까지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주택의 임대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다. 이때부터 이민자들은 뉴질랜드 생활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로의 이주업무를 하는 이주공사라면 대부분 기본 정착 서비스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게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공사가 현지 지사가 없는 관계로 한계에 부딪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래도 이주 희망자의 경우 이주공사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에 주의를 두면 한결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뉴질랜드 주거 방식의 시작은 임대이다. 일부 이민자들은 도착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능하면 구입 방식이 주택 담보 은행 융자를 통한 경우라 하여도 일정한 기간(약 1년)이 지난 후 구입을 권한다. 특히 임대를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시에는 혹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지인 또는 이주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 임대를 하려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신문의 “To Let” 란을 보는 방법이다. New Zealand Morning Herald의 수요일부터 토요일자의 신문이다. 대부분의 광고가 작은 지면 관계로 약자로 표기가 되어있어 그 표기법은 아래의 표가 있다.

Ah	After hours (enings & weekkends)	bus hr	Business hours
pve/pv	Private	rm	Room
Br	Bedroom	abl	Double
Sing	Single	dr/din rm	Dining room
Furn	Furnished	part f	Partly furnished

그외 부동산 임대회사(Real estate agents)로 직접 방문 또는 Letting centres라는 곳이 있다. 그러나 Letting Centres는 임대를 전문적으로 알아봐주는 곳으로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21일전에 임대인(Landlord)에게 서면상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중에 집 주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90일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약 임대한 집이 매매가 되었다거나,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게 된 경우는 42일전에 통보를 하여도 무관하다. 임차인은 주택에 문제가 있을시에는 빨리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토지세(rates)와 주택 보험의 지불 의무가 있다. 임대인은 비상시 또는 24시간 전 주택의 수리 목적의 통보가 없이는 임차인 허가 없이 주택에 방문을 할 수 없다. 등등 여러 경우가 있다.

🔍 주택용자

일반적으로 주택 용자를 mortgage라고 한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먼저 부동산 회사를 찾아가기 보다는 주택용자를 위한 상담을 먼저 받기를 권한다. 일부 이민자들은 은행 용자를 통한 구입보다는 일시불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 은행과의 거래 기록을 만들기에는 적합치 못한 방법이다. 용자의 기간은 최고 30년까지 가능하며, 용자이율은 시장이율에 따라 변동이 되는 Variable rate과 시장이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고정되고 많이 선호하는 fixed rate이 있다. 상환 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불하는 방법과 이자만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다. 용자를 신청하려면 일정액의 수입 근거를 제출하고 자산 증명과 채무액의 제시 월 생활비를 제시하고 은행 또는 금융회사는 용자액의 규모를 알려주고 이율, 상환기간, 수수료, 조건 등 ... 을 제시한다.

🔍 임대가격

주택 또는 아파트의 임대 등 모든 주거지의 임대 가격의 기준은 시내와의 거리, 큰 도시 작은 도시등에 있다. 같은 2 Bedroom House라 하여도 시내보다 시외가, 오클랜드보다 크라이스트 처치가 저렴한 편이다. 임대 가격에는 기본적으로 전기 스토브와 세탁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세 공과금 중 수도세는 집 주인이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임대계약을 작성할 시에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임대 가격은 아래와 같다.

지역(1주당 임대가)	2 Bedrooms	3 Bedrooms
Northern Auckland	\$220	\$270
Western Auckland	\$200	\$250
Central Auckland	\$230	\$300
Southern Auckland	\$210	\$260
Hemilton	\$150	\$210
Tauranga	\$170	\$200
Rotorua	\$142	\$180
Napier	\$150	\$195
New Plymouth	\$120	\$170
Palmerston North	\$140	\$185
Wellington-Upper Hutt	\$140	\$220
Wellington-Lower Hutt	\$180	\$227
Christchurch	\$160	\$200
Dunedin	\$130	\$160
Invercargill	\$ 90	\$120

예를 들어 주당 \$200의 주택을 임대 하였다면 지불되는 금액은

- 4주 몫의 임대료를 보증금 (Bond) : \$800
 - 2주 몫의 임대료를 선불로 : \$400
 - 1주 몫의 임대료 + GST(12,5%) : \$225
- 부동산 업자에게 지불되는 알선료 등 총 \$1,425을 지불하면 된다.

➡ 보증금(Bond)

임대계약의 성립과 함께 임차인(Tenant)이 지불한 보증금(Bond)은 Tenancy Services의 Bond Centre가 관리를 하게 된다. 이는 계약의 만료시 집주인(Landlord)의 임대 주택에 대한 파손 여부의 조사후 파손이 없을 시 만료로부터 23일 이내에 임차인의 구좌로 자동 입금된다. 간혹,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파손 여부를 놓고 언쟁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Tenancy Tribunal이라는 기관에서 중재를 하며 1차적으로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준다.

➡ Tenancy Tribunal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몇가지의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조항이 있으나 간혹 이를 문제삼아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타국에서의 생활이다 보니 문화적인 습관과 생활습관에 따른 차이로 인하여 본의아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몇 가지를 주의하기 바란다.

사회보장제도

뉴질랜드는 다양한 연금과 수당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나라이다. 뉴질랜드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조를 제공한다.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소득자원이 세금으로 부터 조달되며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복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타당한 범주에 드는 사람들에게 현금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혜택에는 가정적 목적(배우자의 지원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편부모에 주는) 고아, 과부 및 부양자가 없는 육아수당과 같은 부양수당이 있다. 무능력자 수당에는 노약, 질병, 장애가 포함되며 장애자들의 주택개조 및 수리를 위한 대출과 자동차 대출도 있다.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점 높아져 2001년 까지는 60세에서 65세가 될 것이며 다른 소득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부가세가 징수되나 개인 노령연금이나 보험에 들었을 때 소득의 절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된다. 퇴역연금은 국가 노령연금과 같은 비율로 지급된다.

▶ 양로원 수당(Rest Home Subsidy)

노인들이 양로원에서 살고 있으며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거나 노후연금으로 지불하고도 부족할 경우엔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소득과 다른 자산여부를 조사한 후에 지불된다.

▶ 과부수당(Widow' Benefit)

남편이 사망하고 과부가 된 경우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미망인에게 지불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부인이 죽고 남편만 생존하는 경우 홀아비에게는 수당이 없다.

▶ 장례비용(Funeral Grants)

개인의 소득과 다른 자산 소득이 있는지를 평가한 후 장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장례비용이 지불된다.

▶ 병자수당(Sickness Support)

영주권자로서 24개월 이상 체류한자로 16세 이상의 사람이 질병이 있어 아프거나 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자수당이 지급된다.

▶ 병자수당(Invalid' s Benefit)

중환자, 만성 영구적인 병자, 사고, 지체부자유자, 장님 등 일을 할 수 없는 자로서 16세 이상이며 뉴질랜드에 10년이상된 사람에게 지급된다.

▶ 직업교육 보조수당(Training Benefit)

16세 이상의 나이로서 직업을 갖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자에게 지급된다. 예를들면 Access Training Courses등이 해당된다.

▶ 가족수당(Family Support)

영주권자로서 24개월 이상 체류한자로 연간 소득이 NZ\$18,000불 ~ 27,000불 이하의 저소득자로 16세미만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불된다. 각종 수당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안에 가족수당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 가입자는 공립병원에서는 치료, 의약품, 임산부시술 등을 무료로 실시하며 개인병원도 정부 보조를 받아 진찰료는 50%, 처방액은 무료이다.

(국제협정)

뉴질랜드는 호주, 영국, 아일랜드, 피지, 스위스, 네덜란드, 그리스 등 일부 혜택수당은 상호간에 상대국가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맺었다. 뉴질랜드에서 노령연금이나 퇴역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살 경우 그 수당액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쿡 제도, 니우에 또는 토켈라우에 체류할 경우에는 100%까지 받을 수 있다.

▶ 자녀양육수당(Family Support)

영주권자로서 24개월 이상 체류한자로 17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부모의 소득이 년 NZ\$35,000불을 넘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 실업수당(Unemployment Benefit)

영주권자로서 24개월 이상 체류한자로 12개월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16세 이상의 사람이 직업을 구하지 못해 실직 상태인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공 직업 소개관인 Employment Service에 구직 신청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 하여도 직업을 찾지 못했을 경우 지급된다. 학생이나 시위에 가담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직업을 구할때까지의 보조수당(Job Search Allowance)

영주권자로서 24개월 이상 체류한자로 16세~17세의 독신으로 직업을 구하고 풀 타임으로 일을 했던 사람, 혹은 대학이나 기수학교에서 학생수당을 받았던 경우(적어도 4개월 이상)에 한해 13주까지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 학생수당(Student Allowance)

영주권자로서 24개월 이상 체류한자로 대학교, 전문학교, 기술학교에서 주당 20시간씩 12주 이상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 소득이 연간 NZ\$10,000불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금액은 한달에 4인 가족기준일때에 NZ\$1,200불 정도가 지급된다.

▶ 청소년수당(Independent Youth Benefit)

영주권자로서 24개월 이상 체류한자로 16세~17세의 청소년으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혹은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 없을 때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 55세 이후 연금제도(Fifty Five Plus Benefit)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20세 이후의 나이에 적어도 10년을 뉴질랜드에서 살았으며 그 중 5년은 50세 이후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한다. 현재는 만 61세 이상부터 받을 자격이 되나 2001년 4월 1일부터는 만 65세부터 해당된다.

🕒 납세(TAX)

- 뉴질랜드의 세법 : 자율 신고제

- 소득세 납세번호 : IRD NO

뉴질랜드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필수조건으로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개인, 동업, 주식회사들이 평생 사용하는 고유 납세번호이다.

- 부가세 납세번호 : GST NO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소득세 납세자 번호와는 별도로 부가세(GST) 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단, 개인의 경우에는 IRD NO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동업, 주식회사들이 납세 번호가 다를 수 있다.

- 뉴질랜드의 세금 분류 :

1. 소득세	INCOME
2. 부가세	GST
3. 후생복지세	FBT
4. 예납세	PROVISIONAL
5. 상해 보험료	ACC LEVY
6. 원천징수	PAYE

- 뉴질랜드의 소득세율

- 개인 - 19.5% (NZ\$ 0불 ~ 33,000불 까지)
- 33% (NZ\$ 33,001불 ~ 60,000불 까지)
- 39% (NZ\$ 60,001불부터 무한금액)
- 주식회사 - 23%

- 뉴질랜드의 회계연도 : 매년 3월 31일 정산

CHINA

▶ 통관정보

자격자는 거류증(만 1년 이상), 취업증을 소지하신 분으로 본 거류증으로 이삿짐 통관을 하신 적이 없어야 하며 이삿짐 반입시에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통관시 여권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관을 하기 위해서 먼저 관봉을 신청하게 되는데 시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화주분이 직접 세관에 나오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은 통관하기 가장 까다로운 국가인데 정부기관이나 세관의 정책변화가 많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 역시 항구나 에이전트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적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전제품의 세관 인정가격의 20%, 가구류 10% 세금이 발생되며 식품은 예외적으로 중량의 10%로 부과됩니다. 골프채의 경우 천진과 북경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그랜드 피아노는 전 지역 수입금지 품목이며 일반피아노의 경우 반입이 가능하나 타 지역과는 별도로 청도는 세금 외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는 천진, 대련, 상해만 반입이 가능하지만 통관하는데 많은 경비와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가져가지 않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련항의 경우 식품은 절대 반입금지입니다. 상해항의 경우 특별히 책에 대해 민감해서 중복되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송기간

	TIANJIN	QINGDAO	SHANGHAI	BEIJING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3~5일	3~5일	3~5일	3~5일
항해일수	2~3일	2~3일	3~4일	3~4일
통관소요기간	7~14일	7~14일	7~14일	7~14일
현지 운송기간	2~3일	2~3일	2~3일	2~3일
총 예상 소요기간	14~25일	14~25일	15~26일	15~26일

JAPAN

▶ 통관정보

원칙적으로 유학비자, 취업비지만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관광비자도 가능하므로 선적전 상담 바랍니다.

통관시 여권(입국스탬프면 포함)과 비자사본 외 별송품신고서가 꼭 필요합니다. 별송품신고서는 기내에서 2부 받으셔서 작성 후 1부는 입국장에 나머지 1부는 에이전트 사무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새물건의 경우 변송품신고서가 있으면 20만엔까지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총기, 마약, 농수산물물은 반입금지이며 쌀은 100kgs 까지 가능합니다.

운송기간

	TOKYO	SENDAI	OSAKA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5~7일	5~7일	5~7일
항해일수	4일	4일	4일
통관소요기간	7일	7일	7일
현지 운송기간	2~3일	3~5일	2~3일
총 예상 소요기간	18~21일	19~23일	18~21일

HONGKONG

🕒 통관정보

화주분의 여권사본과 연락처,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이삿짐으로 통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서류상으로 2~3일 이내 통관이 끝나지만 세관에서 무작위로 검사할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술1병, 담배는 12갑까지 가능하며 초과할 경우 관세가 100% 발생하며 위험물이나 무기류는 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운송기간

	HONGKONG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7~14일
항해일수	5~7일
통관소요기간	3일
현지 운송기간	1~2일
총 예상 소요기간	16~26일

PHILIPPINES

🕒 통관정보

워킹비자, 은퇴비자, 종교비자를 소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비자취득과 입국한지 3개월 이내 통관하셔야합니다. 만약 연장된 비자의 경우 3개월이 넘었다면 약간의 비용 지불로 면세가 가능하며 은퇴비자는 비자를 발급 받은지 90일 이내까지 면세입니다.

통관시 여권원본이 꼭 필요하며 비가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됩니다. 만약 면세자격이 안 되실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약 USD 600 정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이삿짐으로 인정되면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중복아이템이 많거나 새 물품이 있을 경우 세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운송기간

	MANILA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7~14일
항해일수	5~10일
통관소요기간	3~5일
현지 운송기간	1~2일
총 예상 소요기간	16~31일

THAILAND

🕒 통관정보

여권만 소지하면 누구나 이삿짐을 통관할 수 있으며 통관시에 여권원본이 필요합니다. 관세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약 USD400~500 정도 발생하지만 1년이상 워크퍼밋을 소지하신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자전거, 음식물, 새 가전제품은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고라도 동일 가전제품이 두 개 이상일 경우 또한 그렇습니다. 위험이 될 수 있는 탄약, 총기류, 화기 및 마약류는 반입 금지입니다.

운송기간

	BANGKOK	PHUKET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7~14일	7~14일
항해일수	10~12일	10~12일
통관소요기간	3~5일	3~5일
현지 운송기간	1~2일	3~5일
총 예상 소요기간	21~33일	23~36일

MALAYSIA

🕒 통관정보

특별한 고가품이 없는 이사화물은 여권사본만 있으면 면세통관이 가능하나 사바, 사라왁 지역의 경우 비자(워크퍼밋, 가디언, 학생비자, MM2H)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국민의 경우는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셔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을 위해서는 미리 현지에 입국해 계셔야 하며 컨테이너 검사는 랜덤으로 진행됩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마약류, 무기류, 음란물, 동물의 뼈나 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주류나 담배의 경우 지나치게 많이 가져갈 경우 벌금 및 통관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나무 및 대나무로 만든 가구는 깨끗이 건조해서 보내야 하며 진공청소기의 경우 먼지주머니를 제거해서 보내야 하는데 새 것일 경우는 관계없고 야외용품(자전거, 낚시대, 골프채, 등산용품 등) 역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송기간

	KUALA LUMPUR	KOTA KINABALU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7~14일	10~20일
항해일수	10~13일	10~13일
통관소요기간	3~5일	3~5일
현지 운송기간	1~2일	1~2일
총 예상 소요기간	21~34일	24~40일

INDONESIA

🕒 통관정보

통관시 여권, 거주자 증명서(KITAS), 거주취업허가 증명서(IKTA) 원본을 귀사 에이전트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입국한지 3개월이 지나면 세금이 징수됩니다. IKTA는 9개월 이상 유효해야하며 서류상에 12MONTH가 아닌 12개월의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KITAS는 365일 중 14일 이상 부족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새 전자제품은 세금징수 1순위입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고장이 잦으니 가능하면 50HZ 트랜스를 준비하실 것을 권고 해드립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칼라프린트는 중고라도 반입금지며 과자, 음료수 등의 먹거리 및 비누, 치약 등의 생필품 역시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가져가실 경우 유아용이나 성인용 모두 새 제품은 안되지만 중고는 상관없습니다.

운송기간

	JAKARTA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7~10일
항해일수	15일
통관소요기간	5일
현지 운송기간	2~3일
총 예상 소요기간	29~33일

INDIA

🕒 통관정보

1년 이상 비자를 받은 분만 통관이 가능하시며 여권과 비자를 지참하시어 세관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전자제품 및 고가제품은 검사를 실시하며 컴퓨터를 제외한 전자제품의 경우 15% 관세가 부과되며 모든 새 물품의 경우 35%, 한 아이템이 두 개 이상일 경우 중복제품에 대해 35% 발생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이주화물로는 반입금지 품목이 없습니다.

운송기간

	NEW DELHI	CHENNAI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7~10일	7~10일
항해일수	27일	20일
통관소요기간	3~4일	3~4일
현지 운송기간	3~4일	3~4일
총 예상 소요기간	40~45일	33~38일

UNITED ARAB EMIRATES

🕒 통관정보

3년짜리 거주비자를 소지하신 분은 누구나 무관세로 이삿짐 통관이 가능하시며 여권사본과 거주비자 사본만 제출하시면 현지 에이전트 사무소에서 위임통관을 진행하므로 직접 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화물에 관해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차량에 한해서만 5% 관세가 발생합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술, 마약, 선정적인 서적 등 이슬람문화에 위해한 물품은 반입금지입니다.

운송기간

	DUBAI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7~14일
항해일수	20일
통관소요기간	2~3일
현지 운송기간	1~2일
총 예상 소요기간	30~39일

UNITED KINGDOM

▶ 통관정보

통관시에 여권(입국스탬프 포함)과 비자사본, 워크퍼밋과 면세승인신청서(C3 FORM)를 작성하여 에이전트 사무소에 제출하시되 영국내 거주할 주소와 전화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가끔 컨테이너 검사가 들어갈 경우 X-RAY 검사가 진행되며 2~3일 정도 통관 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음식물의 경우 소량 허용되지만 반입품목과 중량, 가격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주류나 담배, 향수는 무조건 세금발생 품목입니다. 음식물의 경우 소량 허용되지만 건어물은 절대로 반입이 불가하며 반입품목과 중량, 가격을 미리 세관에 신고해야하는데 약간의 세금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송기간

	LONDON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7~14일
항해일수	30~33일
통관소요기간	5~7일
현지 운송기간	1~2일
총 예상 소요기간	43~56일

GERMANY

▶ 통관정보

화주분께서 최소 독일 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하며 통관 시에는 여권사본과 12개월 이하 거주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자국민의 경우 최소 1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해야만 합니다. 모든 서류가 구비될 경우 평일 기준으로 통관은 2일이면 끝납니다.

▶ 반입금지 및 제한품목

식품, 주류, 담배, 상아는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운송기간

	HAMBURG
포장 후 선적대기 기간	10~15일
항해일수	30~32일
통관소요기간	2~3일
현지 운송기간	1~2일
총 예상 소요기간	43~52일